

DRC

인 사 관 리

인 권 헌 장

표준번호 : DRC

개정번호 :

개정일자 : 2025-페 이 지 : 1/3

# 인권헌장

#### 1. 개요

## 가. 인권헌장 제정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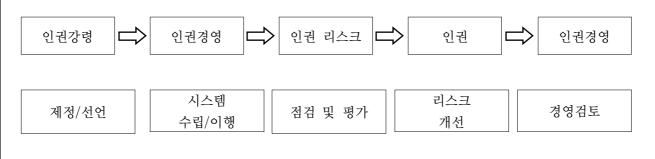
㈜두원냉기는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사업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본 인권헌장을 선언한다. ㈜두원냉기는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대한민국 헌법과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및 국제노동기구 헌장(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Constitution), OECD 실사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등 인권·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지지한다.

### 나. 인권헌장 적용범위

본 인권헌장의 적용대상은 ㈜두원냉기 임직원(임원과 직원, 사내 도급업체 근로자 등 두원냉기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또한, ㈜두원냉기 임직원은 공급자 및 판매·서비스 조직을 대할 때에도 본 인권헌장을 따르며, 더 나아가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본 인권헌장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인권헌장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 시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원냉기의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 다. 인권 리스크 관리체계

㈜두원냉기는 모든 임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본 인권헌장에 따라 인권경영 실행에 필요한 내부 시스템을 수립하며, 정기적으로 인권 리스크를 평가 및 개선하고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공유한다. 000의 인권경영 담당 조직 등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인권 리스크관리체계를 이행하며, 인권관리 절차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해당 관리체계를 개정한다.





DRC

인 사 관 리

개정번호 :

인 권 헌 장

개정일자 : 2025-페 이 지 : 2/3

표준번호 : DRC

## 2. 기본 원칙

## 1.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주)두원냉기는 모든 임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 신분증 또는 사증 등을 요구하는 방식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자유를 억압하여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아니 한다. 또한 아동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연소자에 대하여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소자보호조치를 이행하여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며, 근로로 인하여 연소근로자의 교육기회가 제한되지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 2. 근로조건 준수

(주)두원냉기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의 근로에 대해 동일 노동 또는 자격에 대한 동일 임금 원칙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합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의 역량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기회와 직무수행에 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 3. 인도적 대우

(주)두원냉기는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신체적·언 어적·관계적·정서적인 강압, 학대, 괴롭힘, 성희롱 및 불합리한 대우를 금지한다.

## 4. 차별금지

(주)두원냉기는 임직원에 대하여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학력,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가족현황, 성적 지향성, 노조가입,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모집 및 채용, 배치,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해고, 퇴직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지 아니하며,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 5.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주)두원냉기는 본 인권헌장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 법규에 의한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 권리를 보장하며, 구성원이 노동조합을 결성 또는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또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 및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나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6. 산업안전 보장



DRC

인 사 관 리

인 권 헌 장

표준번호 : DRC

개정번호 :

개정일자 : 2025-페 이 지 : 3/3

(주)두원냉기는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신체적·정신적 위험예방 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 안을 마련한다.

#### 7. 지역주민 인권보호

(주)두원냉기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의 자유를 보호한다.

#### 8. 고객인권보호

(주)두원냉기 모든 임직원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보호를 최우선 으로 해야 하며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 3. 부칙

1. 본 헌장은 2025년 월 일부터 제정, 시행한다